

인천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1가단2044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욱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다훈

변 론 종 결 2022. 11. 9.

판 결 선 고 2022. 11. 30.

주 문

1. 피고들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7. 3.

2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2. 소외 D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4.경 소외 E의 소외 D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 6,000만 원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가 D에게 도달하였다.

나. 원고는 D에 대한 2007. 12. 12.자 인천지방법원 2007차19950호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3896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19. 'D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2021. 1. 20. 현재 합계 217,019,178원(= 원금 60,000,000원 + 지연손해금 156,624,658원)이다.

다. D의 부(父)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9. 29. 사망하였고, 이후 망인의 처인 피고 B 및 자녀들인 D, 피고 C은 2017. 3. 24.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B이,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C이 각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2017. 3. 30. 피고 B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마. D의 상속지분은 2/7이고, D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D 및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D은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잃게 되어 재산분할결과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으로서는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D이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생전인 1984. 6. 23.경 안성시 G 소재 토지 및 건물, H 토지, I 토지 1,160㎡를 증여받았고, 1990년경에도 전세자금을 증여받았는데, 이러한 D의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D이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증여를 받았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에 있어서 D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의 채무상태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고, D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들과 D의 관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이루어진 시기와 내용, D의 재산상태와 채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들이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분할협의를 D의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피고들이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법정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D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위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C은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위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범진